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6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요	2
2. 개정안의 입법형식, 발의 배경 및 체계	8
3. 개별법의 검토	12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
나. 「공증인법」	15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
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21
마. 「민법」	25
바. 「법무사법」	28
사. 「변호사법」	30
아. 「비송사건절차법」	32
자. 「상법」	35
차. 「신탁법」	38
타. 「외국법자문사법」	41
카. 「정부법무공단법」	44
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 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파산 및 회생 절차 개요

○ 도산(倒産)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채권자 사이에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을 포함하며, 청산형 절차로서 책임 재산의 공평한 배당을 도모하려는 파산과, 재건형 절차로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음¹⁾.

○ 파산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법인파산절차로 구분되며, 개인파산 절차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²⁾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³⁾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⁴⁾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 달리 청산보다는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는데 더 의미가 있음.

1) 법원공무원교육원, 「도산실무: 개인파산, 개인회생」, 2016., p.3-7., 177. 참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4)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⁵⁾하고, 파산재단을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를 면제⁶⁾하는 것이 면책으로, 법원은 면책을 신청⁷⁾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고 있음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받음이 없이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 9. (생략)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10년이 경과한 때 당연히 복권⁹⁾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해야 함¹⁰⁾. 복권은 파산선거로 인해 제한된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과 권리를 일반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함¹¹⁾.

- 회생절차는 적용대상 및 채무액 등에 따라 법인이나 대규모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회생¹²⁾,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¹³⁾, 소규모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제538조(동의를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1)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8판)」, 법문사, p.1097.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개인회생¹⁴⁾으로 구별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¹⁵⁾,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¹⁶⁾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기존 법적 지위가 유지되므로 공적·사적 지위와 자격을 회복하는 효력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채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채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을 가진 복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이동하고,¹⁷⁾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¹⁸⁾ 회생계획의 이행을 통해 회생절차가 종료되어야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권이 회복되나,

- 파산절차 또는 일반회생절차¹⁹⁾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것이고 복권되거나 관련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그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볼 것이므로 파산절차 또는 일반회생절차 중에 있는 개인으로서는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²⁰⁾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일반회생절차 종결시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종전에 관리인이 수행하고 있었던 채무자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절차 진행중에 개인회생재단 관리 및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법 제580조제2항)’

장중운, 「개인도산개론: 개인파산·개인회생·일반회생·국제도산」, 진원사, 2016. p.530.~531.

20)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가21

… 자본주의경제질서하에서 파산은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반사회적·범죄적 행위로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의 불성실이나 부도덕의 징표가 된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설사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원인이 무절제한 소비생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파산자가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여 그에게 뚜렷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의 범위에서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개정안의 입법형식, 발의 배경 및 체계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동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일괄하여 삭제하려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수의 개별법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임.

법률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여러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순 용어 개정이나 체계 정비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경우에 다수의 법률 일괄개정 방식을 사용²¹⁾하는데, 동 법률안은 개정취지가 동질적인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별개의 입법절차를 거침으로써 발생하는 입법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각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개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됨.

- 개인채무자에게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법의 결격사유 조항 등을 통해 이들의 공·사법상(公·私法上) 자격이 상실·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해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두는 것임²²⁾.

21)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156.

22)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371.

파산이나 회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에도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도산제도의 목적²³⁾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²⁴⁾하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²⁵⁾이 있어왔음.

- 이러한 지적들로 인하여 법무부는 2014년 294개의 법률 중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파산자를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 39개를 선정²⁶⁾하여 일부 법령을 개정할 바 있고,

법제처도 2017년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5) "파산선고 따른 자격제한 규정 삭제… 회생법원 전국 관할 요건도 완화해야", 법률신문, 2021년 5월 3일자

2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80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3614]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음²⁷⁾.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바 있고, 이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바 있음.

-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파산절차 등에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
하고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로 법률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법별 삭제하고자 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개정대상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 유형>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비송사건절차법 2. 신탁법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 민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증인법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 법무사법 5. 변호사법 6. 상법 7. 외국법자문사법 8. 정부법무공단법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파산자 등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법제처 보도자료, 2017.12.25.

○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은 각 개별법별로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자 결격사유를 두는 목적·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해당 사유를 가진 자를 특정 자격·직업에서 배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해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⁸⁾을 감안하여,

각 개별법별로 결격사유를 둔 목적·취지 및 결격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16조²⁹⁾제2항은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등으로 결격사유 규정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별 결격사유 삭제에 대한 검토시 위 기준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8)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366.

29)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3. 개별법의 검토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략)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³⁰⁾으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³¹⁾, 법인의 임원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

3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두도록 하고 있음³²⁾.

- 공익법인의 임원인 이사는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³³⁾하고, 감사는 공익법인 재산상황의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³⁴⁾하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것과 공익법인의 임원 자격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이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³⁵⁾ 및 금융회사의 임원³⁶⁾ 등도 파산

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 4.(생략)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5)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공익법인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공익법인 임원이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업무의 성격상 경제적 신용이 특별히 요구되는 유사한 직종들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목적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공익법인의 임원은 직무에 있어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인한 궁박한 사정에 있을 경우 공익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나. 공증인법

개정안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8. (현행과 같음)

- 임명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³⁷⁾으로,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³⁸⁾

37) 「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문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8)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³⁹⁾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게 되면 법체계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의 공증 업무는 공적인 효력을 가지고, 공증이 가진 공적 역무로서의 성질로 인해 공증인을 공무원의 지위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공증인을 공무원의 지위로 의제하는 취지 및 공증이 가지는 공적 역무로서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증 직무에 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증인이 공박한 상태에 놓일 경우 촉탁인의 재산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9)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참여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등의 권한을 가진 배심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제17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하고, 피고인이 유죄로 결정되면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 토의함. 이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배심원에 선정되면 국민참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배심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⁴⁰⁾,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법원·검찰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
공무원·교육훈련의무 이행 중 예비군은 직업으로 인하여 배심원
에서 제외됨⁴¹⁾).

이러한 배심원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등 심리에
참여⁴²⁾하고, 유·무죄에 대한 평의 및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는 등⁴³⁾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배심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4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①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배심원이 재판과정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역할, 배심원 자격에 요구되는 공공성, 배심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경우 재판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 제28조 및 제30조⁴⁴⁾가 검사 또는 변호인에 의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불선정 결정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 제30조부터 제32조⁴⁵⁾) 등 불성실하고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한

4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제1항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배심원의 해임)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

파산자 등 만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강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07년 법 제정 당시에도 개정안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결격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⁴⁶⁾.

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3521호, 정부제출) 심사보고서, 2007.4.30.

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상속·유증 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등’)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삭 제>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선임에 따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 등을 관리⁴⁷⁾하고, 해당 재산의 보존 또는 일정 범위에서 재산을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등의 권한을 행사⁴⁸⁾하여 북한주민

4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유증재산 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에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준용되고,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 재산 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북한주민, 검사 등이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⁴⁹⁾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재산관리인에게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법원은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⁵⁰⁾, 회생절차개시결정등 및 파산선

4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4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5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고를 받은 사람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중 ‘회생절차개시결정등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재산관리인의 직무특성에 따라 재산관리인에게 재정정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 재산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및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던 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파산선고 등의 사실 자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⁵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등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추후 회생절차의 종결 및 면책 등으로 복권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에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이 요구되며,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제한됨에도 불구하고

5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22.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하고,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권한 남용 등으로 관리재산을 유출·유용할 우려가 존재하며, 재산관리인은 본인과 법정위임 관계에 있는데 대리인의 파산은 「민법」⁵²⁾에 따른 대리권 소멸사유 및 위임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2)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마. 민법

개정안은 후견인의 결격사유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2. (생략) 3. <u>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u> 4. ~ 9. (생략)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9. (현행과 같음)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u>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u>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u>제한능력자</u> -----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⁵³⁾하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음⁵⁴⁾.

○ 개정안에 따라 후견인의 결격사유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

53)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54)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산선고를 받은 자’를,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은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지 않아 후견인의 결격사유와 달리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후견인과 유언집행자가 직무와 권한의 특성상 재정적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과,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충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던 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파산선고 등의 사실 자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⁵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은 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⁵⁶⁾에서 대리인의 파산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어 현행 법률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

5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22.

56)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유언집행자는 유언증서의 검인·개봉 및 재산목록의 작성 및 관리·상속재산의 집행행위를 맡게 되는데, 파산선고를 받아 궁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유언자의 생전 재산에 대한 관리·집행을 맡게 할 경우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바.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 및 공매 사건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⁵⁷⁾함.

개정안에 따라 법무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률

57)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사무 및 재산사무의 처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무사는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리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산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자 위임의 종료사유⁵⁸⁾인 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상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자격의 경우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제도와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법무사는 대리권은 상실하지만 법무사 자격을 유지하므로 법무사의 무권대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사의 무권대리로 인한 각하결정 등으로 의뢰인이 적절한 신청시기를 놓쳐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한 점, 법무사가 극도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의뢰인의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강제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8)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사.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 8. (생략)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생략)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진 법률 전문직으로⁵⁹⁾, 타인의 위임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⁶⁰⁾,

구체적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헌법재판 등에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인·허가 신청 및 이에 관련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며,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련된 감정·대리·중재·화해·상담 등의 행위를 함.

59)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60)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변호사는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리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산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자 위임의 종료사유⁶¹⁾인 점, 공인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률상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자격의 경우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제도와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은 상실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므로 변호사의 무권대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무권대리로 인한 각하판결 등으로 인한 소송 지연 등으로 의뢰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변호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의뢰인의 재산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1)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아.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은 법인 및 회사의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산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 4. (생략)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민법」상 법인 또는 「상법」상 회사가 해산하고 일정한 사유⁶²⁾가 있는 경우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⁶³⁾하게 되는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청산인은 대내적으로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62)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63)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清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바, 구체적으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 등을 수행하고, 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⁶⁴⁾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청산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은 청산인이 법인 또는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 재정적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던 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파산선고 등의 사실 자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⁶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추후 면책 등으로 복권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64)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6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22.

보임.

- 법무부는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궁박한 자에게 잔여재산의 인도나 채권의 추심·채무의 변제 등 청산인으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바,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략)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시하며 지배주주의 전횡 등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업무의 성격상 경제적 신용이 특별히 요구되는 유사한 직종인 공익법인의 임원⁶⁶⁾ 및 금융회사의 임원⁶⁷⁾ 등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고⁶⁸⁾ 위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⁶⁹⁾되어야 하는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규정⁷⁰⁾과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

6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68)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69)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70)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 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있다는점 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상법」은 사외이사에게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차.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u>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u>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수탁능력) ----- ---- <u>한정치산자</u> ----- -----.

- 신탁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함.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⁷¹⁾,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⁷²⁾.

개정안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 임무가 종료된다는 점⁷³⁾,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관계

71)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72)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주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3) 「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와 신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⁷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던 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파산선고 등의 사실 자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⁷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추후 면책

74)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7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22.

등으로 복권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수탁자가 궁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위임인의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끝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파산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u>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5조(결격사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외국법자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EU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법률시장을 상호개방한 국가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⁷⁶⁾으로,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원자격국⁷⁷⁾의 법령에 관한 자문⁷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76)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78)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개정안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외국법자문사의 업무가 외국관련 법률사무 및 재산사무의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산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인 점,

외국법자문사가 새롭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때에는 자격승인이 당연 취소되고,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 등에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 의한 임의적 자격 승인 취소사유가 되므로(법 제7조79) 이 조항과의 체계적합성

-
-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79) 「외국법자문사법」 제7조(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는 법 제28조제3항⁸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윤리장전에 의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파산선고를 받아 재정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외국법자문사가 자문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80)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은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8년 출범한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인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 등의 소송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등(이하 ‘국가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②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③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등이 주된 사업임.
- 정부법무공단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는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⁸¹⁾하므로 이들은 공단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정부법무공단의 사업의 공공성,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법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법무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⁸²⁾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⁸³⁾의 임원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법률상 지위와, 자격, 운영 실무 등 고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81) 「정부법무공단법」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82)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 ----- -.
1.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또는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1. 피성년후견인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관리위원회⁸⁴⁾는 회생법원장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⁸⁵⁾등 법률·회계·금융·경제 등의 방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위촉하는 관리위원의 보조를 통해 도산

8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중한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신속,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⁸⁶⁾ 회생법원에 설치됨.

관리위원회는 ①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 등(이하 ‘파산관재인등’)의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② 파산관재인등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③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등을 수행하며⁸⁷⁾, 도산절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력을 법원에 제공하고 사법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음.

관리위원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법원의 위임을 받아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재산관리인이 수행하는 재산사무 처리에 대한 허가를 하는 등⁸⁸⁾의 역할을

86) 노영보, 「도산법강의」, 박영사, 2018., p. 50.

8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 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관리위원이 도산절차에 관해 법원의 조력자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재정적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 파산절차 중에 있는 자가 파산관재인인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무부**는 관리위원은 도산절차에서 법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공익성을 갖는 지위라는 점 및 파산선고시 채무자는 자신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제한됨에도 이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타인의 재산 관리를 감독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격사유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 운영자금의 지출

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문 의 처
02-6788-5075